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413
----------	-----

2024. 4. 22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4. 4. / 정현미 의원 등 10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4. 4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4. 2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, 남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-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(안 제6조)
- 이스포츠시설의 설치·운영 및 포상을 규정(안 제7조~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

우리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,

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7개의 종목이 선정되는 등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.